

기존 규제혁신 추진시스템

추진 체계

주요 추진 내용

한계

덩어리 규제 개선 미흡

-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복합 규제 개선 부족으로 경제활력 제약

수요자 중심의 현장애로 개선 미흡

- 민간 규제건의 검토시 수요자 시각에서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 부족

규제개혁위원회(행정규제기본법)

- 대통령 소속 위원회(국무총리·민간 공동위원장)
- 규제정책 심의·조정, 규제심사·정비

국무조정실(정부조직법)

- 법부처 규제개혁 기획·총괄
-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지원

규제 심사·정비

신설·강화규제 중심 심사

- 규제개혁위원회는 모든 신설·강화규제를 심사하여 과도한 규제 철회·개선 권고('21년 1,129건 심사)
- '17년~'21년 중요 규제(전체회의 심사)는 3.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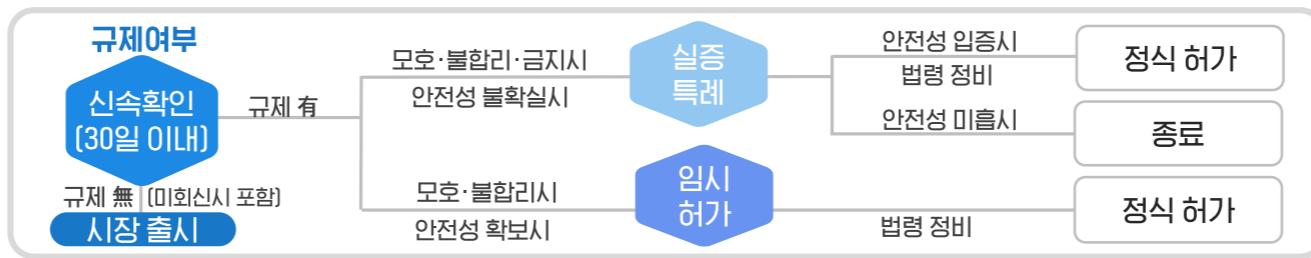
규제비용관리제

- 규제 신설·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기업 등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순비용 산정 ('16년 도입)
 - *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(훈령) 근거
- 신설·강화 규제 순비용을 부처별로 단순 집계
- 규제연구센터(KDI, 행정연구원)에서 규제영향분석, 규제순비용검증 등 지원

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·운영

규제샌드박스(산업융합촉진법 등 6개 법률, 영국)

- 기존 규제체계 하에서 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허용
- 688건 승인(투자 6.4조원, 고용 7,400여명)
- 6개 분야 : ICT융합(科部), 산업융합(산업부), 혁신금융(금융위), 규제자유특구(중기부)*, 스마트도시(국토부), 연구개발특구(과기정통부)
- *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29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(투자 2.4조원, 고용 2,400여명)



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(행정규제기본법)

- 미래 신산업 전개 양상을 예측하여 미리 규제이슈 발굴
- 7개 분야*, 274개 규제이슈 선제적 발굴
 - * 자율차, 드론, 수소차·전기차, VR·AR, 로봇, AI, 자율운항선박

핵심분야 규제개선

기업활동(국무조정실)

- 소상공인·자영업자 규제부담 완화, 공장입지·온라인 영업·창업·신산업 등 규제 개선
- '17 - '21년 3,461건 개선

네거티브 규제 전환(행정규제기본법)

네거티브 규제 전환(행정규제기본법)

-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이 신산업·신기술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
- 네거티브 리스트(금지사항 외 허용), 개념정의 확대, 분류체계 유연화 등
- 법령·자치법규 등 583건 개선

국민생활(국무조정실)

- 행정·복지·의료·주거 등 일상생활 불편 해소, 지역 불합리 규제 정비
- '17 - '21년 4,286건 개선

갈등규제의 주도적 해결 부족

- 신산업 확산에 따른 신구산업·업역 간 첨예한 이해갈등 조정 시스템 미약

규제관리시스템 사각지대

- 전체 신설·강화 규제 중 일부만 중요규제 심사, 규제개선 이후 사후관리 부족

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

- 규개위 자문위원회
- 민간 전문가 120명 구성
- 신산업 규제애로 해소
- 무인이동체, 바이오헬스, 모빌리티 등 5개 분야

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

- 대한상의·중기중앙회와 공동 운영(22명 : 13+9)
- 기업 규제애로 해소

규제개혁신문고

- 온라인 기반 규제애로 건의·해소

현장 규제애로 해소

신산업 규제애로 해소(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)

- '17년부터 신산업분야 민간전문가로 신산업규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산업 규제애로 해소 추진
 - *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,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(국조실 훈령) 근거
- 경제단체, 업종단체, 기업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건의과제 발굴
-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건의자·관계부처와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
- '21년 63건 개선

기업 규제애로 해소(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)

- '04년부터 민관공동으로 민관합동규제개선단 설치, 기업 건의·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
 - *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총리 훈령) 근거 ('13년)
- '21년 545건 접수, 224건 개선

국민 규제애로 해소(규제개혁신문고)

- '14년부터 국민 누구나 규제애로를 직접 건의하는 온라인 창구인 규제개혁신문고 운영
 - * 규제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총리 훈령) 근거
-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규제애로를 정부는 신속 검토·개선
- '21년 1,549건 접수, 232건 개선

새정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

원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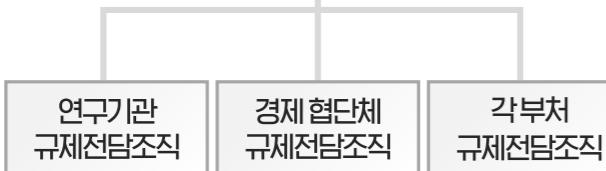
1. 全정부, 경제단체, 연구기관, 퇴직공무원 등 국가 역량을 총결집하여 덩어리규제 집중 개선
2. 기존 규제혁신 제도 지속 운영 + 필요한 범위내 제도 최소보완 → 1년 후 성과재검토·제도개편
3. 각 부처 책임하의 자율적인 규제혁신 중점 추진 + 성과창출 위한 행정문화 조성

추진 체계



규제혁신추진단 단장: 총리

- 퇴직공무원, 연구기관, 경제단체 등 민관 합동 (200명)으로, 국무총리 소속 추진단설치(2개 분과·10개 팀 구성)



덩어리규제의 전략적 개선

퇴직공무원·기업·전문가 역량 결집, 덩어리규제*집중·발굴 개선

- * 기업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복합 규제 (예: 수도권, 노동, 환경 규제)

- 경제단체, 연구기관, 부처 등의 규제전담조직 연계, 덩어리 과제 발굴
- 가능한 한 자체 개혁
- 기타의 경우 적정한 기관에 이송
- 규제혁신추진단에 이송된 덩어리 규제를 전담팀을 운영하여 규제비용, 국제기준 등 종합 검토 → 개선안 마련
-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해결되는 경우 종결
- 해결되지 않는 경우,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 논의, 최종 확정
- 소관부처 책임하 후속조치 이행, 규제혁신추진단은 현장 점검·보완

“ 관리시스템 혁신 ”

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

신설

-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(사무국 : 국무조정실)
- 대통령(의장), 총리(부의장), 관계부처 장관, 지자체, 경제단체, 전문가 등 민관 참여
- 총리가 회의 주재 하되, 필요한 경우 대통령 주재

정부 부처

국무조정실

규제개혁위원회

규제심판부

신설

- 민간전문가, 현장활동가로 규제심판관 구성(100여명)
→ 견의 건별로 규제심판부 구성 (Pool제)

규제심판제도

기업·국민의 현장 규제애로를 균형적 시각에서 심판(4단계)

견의 접수

- 온라인·오프라인 창구 통해 견의 접수
- 폭넓은 의견수렴필요시 '경청기간' 설정, 토론진행

소관부처 검토

- 견의 수용시 규제개선안 마련·추진

규제심판부 판결

- 소관부처 불수용 과제에 대해 규제심판부가 이해관계자·부처 의견수렴* 통해 검토
→ 권고안 제시

규제개혁 위원회 개선권고

- 소관부처가 해당 규제 필요성 타당성을 증명
- 소관부처가 규제심판부 권리·불수용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권고안의 결
-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함

규제혁신 전략회의 대별주제

- 소관부처가 규제개혁위 권리·불수용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검토, 최종 확정

집행 점검

- 소관부처 이행, 국조실은 신속입법 지원
- 민관합동으로 이행여부·개선효과 점검

규제행정 디지털 전환

- 법률 조문 디지털화, AI 적용 등을 통한 규제영향분석 고도화
- 디지털규제 내비게이터 구축, 복잡·다양한 규제를 쉽게 제공

규제행정 문화·행태 개선

- 인사체계 전반 개선,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문화 조성
- 현장중심·유연한 행정문화 확산

규제개혁위원회 재설계

- 위원 전문성·다양성 제고
- 민간전문가(규제심사관) 충원을 통한 심사 역량 강화
- 규제연구센터(KDI, 행정연) 역할 및 역량 강화

중요규제 심사 강화

- 위원회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 규제 범위를 확대

* 규제비용 연간 100억원 이상인 경제·사회 파급효과 큰 경우 등

규제비용 획기적 감축

- One-In, Two-Out (200%) 추진
- 부처별 규제비용 감축목표 설정

재검토기한 의무설정

- 신설·강화되는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 설정(3년)
-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영향분석 통해 규제 폐지·개선